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97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감액 경감 규정 변경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2. 27.

다. 회 부 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감액 경감 규정 변경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¹⁾ 방역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보상금 감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

개정안은 보상금 감액 사유 중 ① 소독설비·방역시설을 미구비하거나 소독·방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경우를 삭제하고, 보상금 감액 경감 상한(80%)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48조).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2) 현행법 제48조제3항·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별표2는 현행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보상금’에 관하여만 보상금 감액 및 감액 경감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보상금</u>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 ----- ----- ----- <u>보상금</u>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살처분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본다)-----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 ----- ----- ----- -----.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u>제13조 제6항</u> ,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1. ----- ----- ----- <u>제13조 제6항</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u>	<u><삭 제></u>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④ ----- ----- ----- -----

현행	개정안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u>일부를</u>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u>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u> <u>아니 된다.</u> ⑤ ~ ⑦ (생략)	----- -----<u>전부 또는 일부</u>----- -----<u>. <후단 삭제></u> ⑤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 처분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
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
유자에게 그 가축 등의 살처분³⁾을 명하도록 하고,

우역, 구제역 등 특정한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가
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의 가축 소유자에게 예방적 살처분⁴⁾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3) 살처분이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전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락사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매몰·화학적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

4) 예방적 살처분이란 가축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걸릴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
방 차원에서 살처분하는 것을 의미

가축의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가축을 살처분하는 것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므로,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다만, 현행법은 지급하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보상금 감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⁷⁾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및 검역의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일정 부분 고려함과 동시에, 방역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한 농가 혹은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은 살처분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서 각종 방역 기준을 위반하여 보상금을 감액한 결과, 실제 보상금 지급액이 최소 보상금 수준인 가축평가액⁸⁾의 20%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여, 농가가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살처분 보상금의 성격이 보전비용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② 보상금 감액 사유 중 ‘소독설비·방역시설을 미구비하거나 소독·방제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③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경우’를 삭제하며, ④ 보상금 감액 경감 상한(80%)을 없애려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순차적으로 검토함.

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8)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

① 살처분 보상금의 보전비용 간주

안 제48조제1항은 살처분 보상금의 성격이 보전비용에 해당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상금’의 명칭이 지급대상에게 득이 되는 의미로 사용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⁹⁾¹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상금’이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을 의미하는 바,¹¹⁾ 살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구조로 지급되는 도태 보상금 등을 제외하고 살처분 보상금에 대하여만 보전비용임을 명시하는 것은 법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¹²⁾,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¹³⁾도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9) 한국농어민신문,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00% 받게 되나’, 2025. 1. 14.

(내용) “축산단체는 보상금 상향 지급 등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과 함께 ‘보상금’이란 명칭 변경도 바라고 있다. 보상금이란 명칭이 상금처럼 특별히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10) 농수축산신문, ‘축단협, 농식품부에 방역정책 건의’, 2024. 11. 13.

(내용) “축단협 관계자들은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가축에 대한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지급 대상에게 득이 되는 의미로 사용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축비’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보상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이 더 적절한 용어로 판단되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보전비용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당초 의미가 명확한 보상금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② 보상금 감액 사유에서 방역 기준 위반 삭제

안 제48조제3항제1호는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에서 ‘소독설비·방역시설을 미구비(현행법 제17조제1항 위반)하거나 소독·방제 의무를 위반(현행법 제17조제2항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으로,¹⁴⁾

현행법에 따른 방역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¹⁵⁾ 동일한 사유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농가에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감액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현재 소독설비·방역시설 미구비에 대하여는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감액하며, 소독·방제 미실시에 대하여는 가축평가액의 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는데,

다수의 현행법 위반 사항¹⁶⁾으로 인하여 감액된 보상금으로는 살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중 차단 방역을 위한 기본 수칙 중 하나인 소독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는 점,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소독·방제를 실시하였다면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운영될 필요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법 위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감액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구분	보상금 감액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1회	2회	3회이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1항)	20%	100만원	400만원	1천만원
소독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7조제2항)	5%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주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주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6) 첨부하는 [참고2]의 감액 기준을 참고

사항에 대하여 제재 조항을 두는 동시에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입법례 】

법률명	보상 조건	보상금 감액 요건	제재조항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살처분 등	살처분 명령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병 의심 신고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	
		검사 거부·방해·기피 또는 투약명령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살처분 등	질병 의심 신고 위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취소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살처분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 발생	역학조사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관의 조치에 대한 협조 의무 위반	
		감염병 발생이나 의심시 보고·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제1급·제2급 감염병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급·제4급 감염병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신고를 방해한 일반가정 세대주, 약사, 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관리인 등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관련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방역시설, 소독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별도 과태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에서도 감액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감액 사유와 전염병 발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살처분 후 재입식, 농가 정상화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산란계협회는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농가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 일정기간 사육중단 등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가축전염병 중복 발생에 따라 추가 감액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동일한 가축사육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제48조제3항제4호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독설비·방역시설 미구비 및 소독·방제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보상금 감액 규정을 두는 것은 둘 중 어느 하나의 단일 조치만으로는 방역기준 준수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고¹⁷⁾,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보상금 감액 규정도 두고 있는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가축질병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해태 우려, 과다 재정소요 우려, 방역기준 준수 농가와의 형평성 고려 등 감안시, 감액 기준 삭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됨으로 인해 가중되는 농가의 어려움과 현행 규정에 따라 제고되는 농가의 방역 의무 이행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의 효과,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

17) 헌법재판소(사건 2021헌마119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 등 위헌확인)는 감액조항만으로는 방역기준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음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태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⁸⁾

③ 보상금 감액 사유에서 특정 가축전염병 감염 삭제

개정안은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경우’를 삭제(현행법 제48조제3항제3호 삭제)하려는 것임.

현재 현행법 제48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¹⁹⁾에 따라 구제역²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 뉴캐슬병 감염 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②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 감염 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40%를 감액하고 있는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현행법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감액²¹⁾된

18) 참고로, 정부는 현행법 제17조제1항·제2항 위반시 보상금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은 약 9억원으로 산출하였음(2021년~2023년 평균 소요액 기준)

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 구제역
- 1의2. 아프리카돼지열병
2. 돼지열병
- 2의2. 뉴캐슬병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20) 다만, 구제역의 경우 검출된 구제역 항원이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이고,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되기 전에 실시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농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인 경우에는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음.

21) 첨부하는 [참고2]의 감액 기준을 참고

보상금으로는 살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경우 전파력이 높아 가축전염병 발생 시 다른 농가에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농가로 하여금 해당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운영될 필요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농가에 있고, 농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방역 책임 분담 차원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됨으로 인해 가중되는 농가의 어려움과 현행 규정에 따라 제고되는 농가의 방역 의무 이행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의 효과,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²⁾.

22) 참고로, 정부는 현행법 제48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은 약 137억 4,900만원으로 산출하였음(2021년~2023년 평균 소요액 기준)

④ 보상금 감액 경감 상한 삭제

개정안은 보상금 감액 경감 상한(80%)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농가의 방역 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이 1등급일 경우 가축평가액의 10%, 구제역 등을 최초로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 무항생제 인증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 등에 해당하는 보상금 감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²³⁾

이러한 경감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8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가 방역 실패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상금 감액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가 중 방역 기준을 모두 준수한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경로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음에도 반드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농가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살처분 보상금을 정하는 기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의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

23) 첨부하는 [참고2]의 경감 기준을 참고

는 것으로,

보상금 감액 경감 상한 규정의 삭제 여부는 단순히 동 규정만의 적절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상금 감액 규정과 감액 경감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보상금의 감액의 정도가 농가의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과 비례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농가에 있으므로 방역 책임 분담 차원에서 방역 우수 농가라도 예외없이 가축평가액의 20%는 부담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임.²⁴⁾

문 의 처
02)6788-5424

24) 참고로, 정부는 현행법 보상금 감액 경감 상한(80%)을 삭제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은 약 5억 3,500만원으로 산출하였음(2021년~2023년 평균 소요액 기준). 다만, 실제로 경감 상한을 삭제하여 시행할 경우 농가의 경감 조항 이행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임.

참고1

살처분 보상금 사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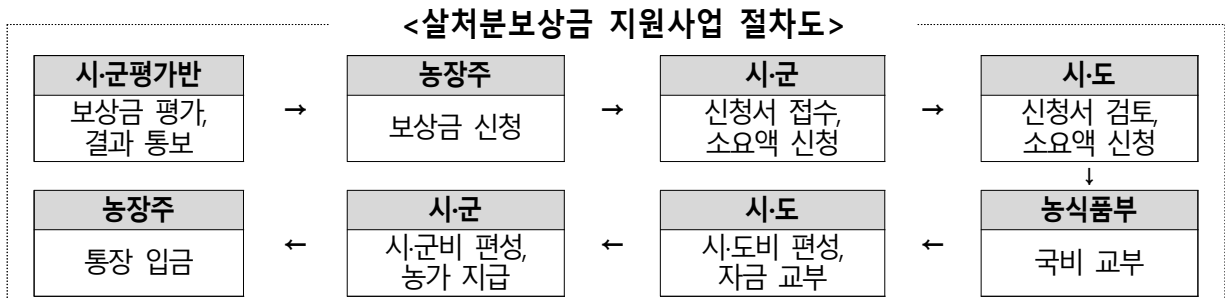
- **(사업목적)**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지급기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

- **(지원기준)** 시·군·구 보상금평가반*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보상금 액수 결정(보상금 등 지급요령 적용)

* 평가반 : 반장(시군구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시군 방역계장, 축협, 동물위생시험소, 공수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등 5명 이내



- **(’25년 사업비)** 802억원(국비기준)

- (지원비율) ①살처분보상금(국비 80%, 지방비 20%), ②기립불능우 폐기 보상금(국비 100), ③ASF폐업보상금(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집행액 : (’19) 1,321억원 → (’20) 641 → (’21)1,953 → (’22) 744 → (’23) 1,201

- **(지급기준)** 살처분 당일 시세* 기준. AI, 구제역, ASF의 경우 살처분한 날 전월 평균시세 적용.

* 한우, 젓소, 육우, 육성돈, 육계, 육용오리 등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시세적용. 다만, 돼지 모돈, 산란계, 종축 등 시세가 없는 가축은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지급

-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 동월 평균시세와 비교하여 ±15% 초과시에는 살처분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 AI,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축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보상금의 과잉·과소 지급방지를 위해, 지급기준을 살처분 당일 시세에서 살처분한 날 전월시세로 변경(24.11)

- (감액) 양성농장 20% 감액, 방역 규정(소독 등) 위반시 5~80% 감액
- (경감) 시군별 최초 신고 농장, 조기신고, 무항생제 농장 등 10% 경감

참고2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경감 기준

□ 지급기준

지급기준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시	기본 100% 지급
	감액, 경감 적용 후 최종금액	최소 20% 지급

□ 감액기준

구분	관련규정	위반사항	감액비율
사육제한	법 제3조의4 제5항	사육제한 명령 위반	100%
질병발생	-	구제역·HPAI·ASF·돼지열병·브루셀라병(소)·뉴캐슬병 발생시(구제역 발생농장의 미감염 살처분 가축은 미감액 가능)	20%
	-	결핵(사슴) 발생시	40%
	법 제23조제1항, 제3항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내 물건	20%
	법 제3조 제5항	산란계 유형부여로 살처분 제외된 농장에서 HPAI 발생	20~70%
외국인 근로자	법 제5조 제3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미 실시	10%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10%
축산관계자 입국신고	법 제5조 제6항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
축산계열화사업자의무사항	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10%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
의심축 신고	법 제11조 제1항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1일째)	10%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2일째)	20%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3일째)	30%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4일이후)	40%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0%
역학조사	법 제13조 제6항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 및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	40%
예방접종검사주사	법 제15조 제1항	구제역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구분	관련규정	위반사항	감액비율
투약 등		검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방역 시설	법 제17조 제1항	소독설비·방역시설 미설치	20%
소독 및 방역활동	법 제17조 제2항	농장 소독 및 구충·구서 미 실시	5%
축산차량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법 제17조의3 제1항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
	법 제17조의3 제2항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시설출입차량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철새군집지역을 출입하면서 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20%
	법 제17조의3 제5항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
방역기준 준수	법 제17조의6 제1항	전실(닭, 오리 한정)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
		일제 입식·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 ASF 발생	100%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명령 위반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법 제19조의2 제1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살처분 명령	법 제20조 제1항	살처분 명령을 24시간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10%
		살처분 명령을 48시간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30%
		살처분 명령을 72시간이상 살처분을 지연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60%
오염물건 처리	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재발생	시행령 제11조 제4항 (구제역, ASF, 돼지열병, 뉴캐슬병, AI, 브루셀라, 결핵병)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발생한 경우	20%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발생한 경우	50%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4회 발생한 경우	80%
축산법	축산법 제22조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0%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초과두수 100% 그외20%
역학 농장	-	항체가 검출된 경우	40%
		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	20%

□ 경감기준

구분	관련규정	경감조건	경감비율
질병 관리 등급	법 제18조	질병관리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10%
		질병관리등급이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5%
조기 신고	-	구제역·HPAI·ASF·브루셀라병 최초신고(시·군·구) 농가	10%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0%
방역 노력	-	CCTV, 역학조사결과 방역기준 준수 노력 인정 농가	10%
		최근 1년간 농장주, 책임자, 종사자가 교육에 모두 참여하고, 방역본부 전화예찰 응답률이 100%인 농가 중 방역본부가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10%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소·돼지 한정)	10%
인증 취득	-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취득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취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 취득	10%